

2023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(안)

우리 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2년 11월 28일

예 천 군



1. 근무조건

- ☐ 근무기간: 2023년 1월 ~ 12월 (12개월)
- ☐ 근무시간
 - 장애인일반형일자리(전일제): 일 8시간, 주 5일 근무
(1~11월 : 주 40시간 / 12월 : 주 37.5시간)
 - 장애인일반형일자리(시간제): 일 4시간, 주 5일 근무
(1~11월 : 주 20시간 / 12월 : 주 19시간)
 - 장애인복지일자리(참여형) : 주 14시간, 월 56시간 근무
- ☐ 근무지: 군청, 사업소, 읍·면 행정복지센터, 사회복지시설 등
- ☐ 보 수 * 보험료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 수령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음
 - 장애인일반형일자리(전일제): 1월~11월 2,010,580원
12월 1,885,520원 (4대 보험 가입)
 - 장애인일반형일자리(시간제): 1월~11월 1,005,290원
12월 953,340원 (4대 보험 가입)
 - 장애인복지일자리(참여형) : 월 538,720원 (고용·산재보험 가입)

2. 모집기간 및 분야

- ☐ 공고 및 신청기간: 2022. 11. 28.(월) ~ 12. 7.(수) 09:00~18:00 (토·일 제외)
- ☐ 모집인원: 88명 / 일반형(전일제) 34명, 일반형(시간제) 19명, 복지일자리 35명
- ☐ 접수처: 읍·면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보건복지팀 및 주민복지팀 방문 신청·접수
* 우편접수도 가능하나, 방문 상담 필수
- ☐ 면접일: 2022. 12. 15.(목) ~ 16.(금) 예정(변동 가능, 추후 개별 통보)
- ☐ 주요직무 및 배치기관

직무명	주요 내용	주요 배치 기관
장애인일반형일자리(전일제·시간제)		
행정도우미	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 지원	군청,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
복지서비스 지원요원	사회(장애인)복지 전반의 직접서비스 및 행정 전담 지원	비영리 복지시설
전담지원 행정도우미	기본적인 사무자동화 업무수행(문서작성, 데이터 관리 등)이 가능한 자	군청
장애인복지일자리(참여형)		
디앤디케어	장애인이 서로 다른 능력을 이용하여 서로의 불편한 부분을 보조, 지원	장애인서비스 기관 등
장애인전용주차 구역 계도	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단속 보조 및 계도 활동	관공서, 학교, 아파트단지 등
환경정리	지역 및 관공서의 정원관리 및 환경 정비, 청소 등	군청, 읍면행정복지센터, 비영리 복지시설 등
우편물 분류	우편분류, 반송소인확인, 소인 찍기, 작업장 정리 등	우체국
급식지원	단체급식 등의 식재료 준비와 조리, 배식, 기구세척, 주방 및 홀 청소, 뒤처리 등의 업무	장애인시설 등

3.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

☐ 신청자격

- 등록 미취업 장애인(만18세 이상)중 보조인 없이 담당업무 수행가능한 자
- 주민등록상 예천군 관내 거주자

☐ 선발방법: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

☐ 선발제외 대상

-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(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)
(단,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(근로계약서 기준)이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작 전일 경우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 가능)
-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
- 배치기관의 법인, 기관 단체의 대표, 임직원
-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
(일반형일자리 전일제*의 경우이며, 그 외 사업유형은 주 30시간미만의 일 자리로 근무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가능)
*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(계약서 기준)이 장애인

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

-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
(단, 반복 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의 경우 신청 가능)
-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(등급외자는 신청 가능)
-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
- 기타 해당 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

□ 우선 선발 및 반복참여 제한기준

- 동점자 발생 시 우선선발기준

- 1순위: 최근 3년간('20년~'22년)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2순위: 최근 3년간('20년~'22년) 참여 이력이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최근 3년간('20년~'22년)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- 3순위: 여성가장, 기초생활수급자
※ 참여 이력: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 경험을 포함
- 가점대상: 취업지원 대상자*,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**, 2023년 특수학
교(급)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 *[별지1] 참조

**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: 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을
수여한 참여자 증빙서류: 상장(수상 연도 이후 3년 이내 사용 가능)

□ 반복참여 제한 기준

- 장애인의 참여기회 확대 및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2년을 초과하여 연속 참여한
장애인은 참여 불가(타지역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포함)
- 참여기간 산정방법: 당해 연도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
로 간주

□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(2년 초과 신청 가능)

-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만 65세 이상인 자
-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(*차상위는 미해당)

4. 제출서류 및 접수처

□ 제출서류 ※**공통사항: 자필서명 필수**

- (공통)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1부 [서식1]
- (공통) 참여자 정보 확인서 1부[서식2]
- (공통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1부 [서식3]
- (공통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* 1부

*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[서식4]하지 않을 경우만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

- (해당자에 한함)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

※ 일반형(전일제/시간제)일자리 지원시: 컴퓨터 관련 자격증,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

- (해당자에 한함) 2023년 특수학교(급), 대학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※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

- (해당자에 한함) 여성가장일 경우 아래 관련서류

구 분	첨 부 서 류	
배우자 무(無)	가족관계등록부	
배우자 유(有)	부모 부양시	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(의사진단서, 생계급여수급자 등)
	가출 · 행방불명	실종신고서
	장애	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
	질병으로 요양 중	의사의 진단서
	군복무	복무확인서
	학교 재학	재학증명서
	교도소 입소	수용증명서, 형확정판결문
	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 업상태에 있는 배우자	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
	이혼소송 제기	이혼소송확인서
	기타 가족 생계 부양	통·반장의 확인서(검토)

(참고) 여성가장 정의

- ① 미혼여성이거나,
 -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·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
 - ③ 신체·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 가족을 사실상 부양*하는 여성
- * 18세 미만(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)인 자녀를 양육,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, 장애·질병이 있는 동거가족(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)을 부양

※ **관련근거** :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-자치단체 합동지침

5. 기타 참고사항

-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(1년) 동안 ‘적극적인 구직활동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. (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)
-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해 성범죄경력 등 범죄경력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. **[별지2] 참조**
-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. **[별지3-1] 참조**
-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. **[별지3-2] 참조**
- ‘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’ 서식은 읍·면에서 직접수령하거나 예천군 홈페이지(<http://www.ycg.kr>) 공고게시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.

6. 기타 문의사항: 예천군청 주민복지실 주민복지팀(☎054-650-6204) 또는 주소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보건복지팀 및 주민복지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

졸업예정자	☐ 특수학교(급)	☐ 대학교		접수번호	
신청분야 (반드시 택1)	☐ 일반형일자리	1순위	☐ 전일제 ☐ 시간제	2순위	☐ 전일제 ☐ 시간제
	☐ 복지일자리	☐ 참여형			
희망직무 (필수작성)	① (관련자격증- 있음 ☐ 없음 ☐ / 관련근무경험- 있음 ☐ 없음 ☐)				
	② (관련자격증- 있음 ☐ 없음 ☐ / 관련근무경험- 있음 ☐ 없음 ☐)				
성 명			연락처	[집]	
				[핸드폰]	
				[이메일]	
주민등록번호	(만 세)			성별	☐ 남 ☐ 여
주 소					
소득수준	☐ 기초생활수급자 ☐ 차상위계층 ☐ 해당사항 없음		장기요양등급 판정유무	☐ 유 ☐ 무	
여성가장	☐ 해당 ☐ 비해당		취업지원대상자	☐ 해당 ☐ 비해당	
장애유형			장애정도	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	
이동수단	☐ 도보 ☐ 대중교통 ☐ 자가용 ☐ 기타()				
주 요 이 력 사 항					
최 종 학 력	☐ 무학 ☐ 초졸 ☐ 중졸 ☐ 고졸 ☐ 전문대졸 ☐ 대졸 이상				
주요경력사항	(~)				
	(~)				
직업 훈련	기관명				
	훈련기간	~			~
	훈련직종				
자격면허	1) 2)	전산 능력	☐ 문서작성 ☐ 표계산 ☐ 인터넷 ☐ 기타()		
사업자등록 유무	☐ 유 ☐ 무		취업상태 여부	☐ 취업상태 ☐ 미취업상태 * 타 재정지원일자리(공공근로, 자활, 노인일자리 등 정부 재정일자리)참여 여부	
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	☐ 유 ☐ 무 (참여기간: 일자리사업명:)				
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지혜당여부	☐ 유 ☐ 무 * 관련근거 : 최근 3년 이내(2020년~2022년) 상장(보건복지부장관상,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)				
위와 같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.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, 상기 개인정보 중 일부는 장애인일자리 사업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됨에 동의합니다. 2022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	
예천군수 귀하					

- 붙임 1. 참여자 정보 확인서[서식2] 1부.
 2. 개인정보 조화·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[서식3] 1부.
 3.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[서식4] (동의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필요) 1부.
 4. 그 외 해당자에 한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(모집 공고문 참조) 각 1부.

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정보 확인서

참여자 정보 확인서

참여자 성명: _____

연락처: _____

구분	확인사항	
사업자등록증 유무	☐ 있음	☐ 없음
장애인등록 여부	☐ 있음	☐ 없음
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	☐ 있음	☐ 없음
미취업 상태 여부	☐ 취업	☐ 미취업
임직원 겸임 여부*	☐ 해당	☐ 미해당

*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, 기관단체의 대표, 임직원 겸임 여부

※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, 선발이 취소되거나
장애일자리사업 참여가 즉시 중단 조치 될 수 있음을 확인함.

신청인:

(서명 또는 인)

2022년 월 일

예천군수 귀하

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및 목적 외 이용·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

예천군청은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·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.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

[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 목적] ·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·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, 지원 등 사업운영 ·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격 여부 확인(장애등록유무 및 장애정도, 장기요양보호등급판정유무조회, 사업자등록여부조회,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,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정보 등) ·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 ·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 · 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·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 ·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성범죄 경력조회 ·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
[수집 ·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] · 성명, 연락처, e-mail주소, 성별, 주소, 소득수준, 학력, 경력, 직업훈련, 자격면허, 전산능력,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및 기간, 보수 · 은행계좌(통장사본), 통장사본, 보수대장, 4대보험 가입번호, 참여조건합의서 ※ 위와 같이 수집·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 활용됩니다.
[근거 법령] ○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(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)
[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] ○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(보유기간 종료일 후 개인정보 즉시 파기)

2.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

[고유식별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] ·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·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, 지원 등 사업운영 ·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격 여부 확인(장애유무 및 장애정도, 장기요양보호등급판정유무조회, 사업자등록여부조회,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,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정보, 건강보험득실확인여부조회 등) ·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 ·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 · 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·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 ·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성범죄 경력조회 ·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
[수집 ·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] · 주민등록번호 ※ 위와 같이 수집·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 활용됩니다.
[근거 법령] ·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45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[고유식별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] ○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(보유기간 종료일 후 개인정보 즉시 파기)
[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] ○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됨을 안내드립니다.

3.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

[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] ·본인식별절차에 이용 ·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, 지원 등 사업운영 ·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적격 여부 확인(장애유무 및 장애정도, 장기요양등급판정유무조회, 사업자등록여부조회,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,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정보, 건강보험득실확인여부조회 등) ·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 ·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·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·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 ·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성범죄 경력조회 ·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
[수집·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] ·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(복지카드), 장기요양등급판정여부,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여부, 특수교육 대상자 여부 ※ 위와 같이 수집·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및 범부처 취업지원시스템 등에 활용됩니다.
[근거 법령] ○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45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[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] ○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(보유기간 종료일 후 개인정보 즉시 파기)
[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] ○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됨을 안내드립니다.

4.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고지

제공처	목적	항목	기간	근거
사회보장정보원	· 참여자 변동 정보 조회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소득수준, 보수액, 사업참여일자 수집된 개인정보	· 사회보장정보원 내부지침에 의거 2년간 보유 후 개인정보 파기	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 19조
한국고용정보원	·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복참여조회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소득수준, 성별, 주소, 연락처, 보수액, 사업참여일자 수집된 개인정보	· 내부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 준영구(요청시 파기)	고용정책기본법 제 13조 2항,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 25조 3항
경찰서	· 범죄 경력조회	· 성명, 주민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성별, 주소, 연락처 수집된 개인정보	· 내부지침에 의거 경력조회 개인정보 보유	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,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사회복지사업법 제 35조의 2
한국장애인고용공단	· 범부처 취업지원 시스템 서비스 의뢰자 서비스 결과	·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서비스제공종료일자, 희망지원 처리상태코드	· 내부 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 준영구	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,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
※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.				

본인은 본 “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”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습니다.

2022년 월 일

성 명: (서명 또는 인)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 : 예천군청 주민복지실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자격확인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연 번	행정 정보 명	연 번	행정 정보 명
1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	
2	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		
3	장애인증명서		
4	한부모가족증명서		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(필요시 기재사항)

■ 주민등록 번호 :

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-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 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- 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021년 월 일

대상자 본인

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 :

전화번호 :

참고

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내용

*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
구분	총점의 10점 가점	총점의 5점 가점
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	-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- 애국지사가 제6조항*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* 6조1항: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	- 애국지사의 가족 - 애국지사가 제6조항*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* 6조1항: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- 제2항제3호*에 해당하는 자 * 제2항제3호: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·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·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	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-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-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	- 제1호*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* 제1호: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
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	-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-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	-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
「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	-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	- 제1호*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) * 제1호: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-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
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	-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 -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-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	- 제1호*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* 제1호: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 -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24조	-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-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-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	- 제1호*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* 제1호: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-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

성범죄경력조회 및 참여제한 관련법

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·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
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(이하 “성범죄”라 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(약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)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·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)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
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(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령을 포함한다)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)부터 일정기간(이하“취업제한기간”)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“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”)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5조의2(종사자)
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. 단,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.
- *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

[별지3-1]

기초생활보장사업 근로소득 공제액범위 근거

[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]

*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(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)

- 24세 이하(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에 해당하는 수급(권)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 적용
-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
-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, 북한이탈주민,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% 공제
- 25세 ~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% 공제

[별지3-2]

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근거

*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(직업)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'직업적응훈련, 직업훈련'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,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. (노동부 차별개선과-2468)